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래학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1957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0일 발 의 자 : 박래학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성백진, 김제리, 박마루, 진두생,

유 용, 서윤기, 김혜련, 유광상,

김인호, 황준환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에 명시된 '지방공무원'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,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,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"지방공무원"을 "공무원"으로 함(조례 제명. 안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지방"을 삭제한다.

제2조 중 "지방공무원"을 "서울특별시 공무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햀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 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 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9의 제2호 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9의 제2호 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 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게 지 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에 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

- 1. (생략)
- 2.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